

■ 하수도법 시행규칙 [별표 17]

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(제73조 관련)

구 분	신 규	변 경
1.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	30,000원	－
2.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의 등록	23,000원	－
3.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	23,000원	15,000원
4.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	23,000원	－